

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(제14조제2항 관련)

1. 기술인력: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

- 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(기계안전·전기안전·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) 또는 산업보건지도사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가스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산업위생관리기술사, 소방기술사, 인간공학기술사,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
- 2) 안전, 기계, 전기, 화공, 소방, 가스, 산업위생,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3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나.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

분야	자격 요건
일반안전, 기계, 전기 및 화공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(기계안전·전기안전·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) 1의2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)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)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소방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) 소방기술사 1의2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)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)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가스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) 가스기술사 1의2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

	<p>관리사</p> <p>2)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가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p>
산업위생 및 생물	<p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2조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</p> <p>2) 산업위생관리기술사</p> <p>2의2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</p> <p>3)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4)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p>

2. 장비: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. 다만,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분야	장비
일반안전, 기계, 전기 및 화공	정전기 전하량 측정기, 접지저항측정기, 절연저항측정기
소방 및 가스	가스누출검출기, 가스농도측정기,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
산업위생 및 생물	분진측정기, 소음측정기, 산소농도측정기, 풍속계, 조도계(밝기 측정기)